

전임교원 소속변경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 규정」 제5조(교원의 소속)에 따라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소속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2.28.)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학사구조개혁에 따라 교원의 소속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원이 소속변경(중복배속 포함)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총장이 교원의 소속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이 규정은 국책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일시적 소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사단위”라 함은 대학(원)의 학부(과)를 말한다.
2. “변경”이라 함은 학사단위의 명칭, 소속 대학(원) 및 기타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학부에서 학과, 학과에서 학부 등 기타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3. “통합”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학사단위를 통합하여 새로운 학사단위를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4. “분리”라 함은 하나의 학사단위를 두 개 이상의 학사단위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5. “폐지”라 함은 학사단위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설”이라 함은 학사단위의 변경, 통합, 또는 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학사단위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7. “중복배속”이라 함은 교원의 주 소속은 변경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속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소속변경 시기) ① 이 규정에 따른 교원의 소속변경은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부의하는 사안은 해당 사안이 교무처에 접수되는 즉시 소속변경 절차를 개시한다.

② 소속변경이 확정된 교원의 인사발령 시기는 3월 1일자 또는 9월 1일자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히 소속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총장이 정한다.

제5조(소속변경신청 절차) ① 학사구조개혁에 따라 학사단위의 변경, 통합, 분리, 폐지가 확정된 경우 교무처장은 해당 학사단위 소속 교원에게 소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학사구조개혁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구조개혁 회의록 등으로 소속변경신청서를 대신할 수도 있으며, 재학생 관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소속변경신청서의 제출 요청을 연기할 수도 있다.

② 학사구조개혁에 따라 학사단위가 신설되는 경우 교무처장은 신설되는 학사단위로의 소속변경

을 희망하는 교원이 소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학사단위로의 신청인 경우는 변경 전 · 후 소속 교원의 2/3 이상과 해당 학부(과)장 및 학장 서명을 받은 소속변경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배속 신청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학부생이 없는 대학(원) 학부 등 소속 교원의 신청인 경우는 예외로 부서장의 서명을 받은 소속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경우, 부서장의 서명을 받은 소속변경신청서를 해당 교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6조(소속변경 심의)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속변경에 동의한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 없이 소속을 변경한다.

②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교원이 소속변경을 신청한 경우 교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와 함께 소속변경신청서를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변경 희망 교원의 최종학위, 최근 3년간 강의과목 등
2. 소속변경 희망 학사단위의 전임교원 확보율, 소속 교원의 세부 전공 등
3. 소속변경 관련 학사단위의 교원 소속변경에 대한 의견서(구조개혁 회의록 등)
4. 그 밖에 교원 소속변경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소속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변경을 희망한 학사단위가 아닌 다른 학사단위 등으로 소속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소속변경을 신청한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교원소속 변경은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 등 기타 사항은 「학교법인 호서학원 정관」을 따른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소속변경(중복배속 포함)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소속변경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소속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되,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행정업무는 교무팀에서 담당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팀장이 된다.

제13조(비밀엄수)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21. 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소속 변경 신청서

▣ 인적사항

성 명		교직원번호	
소 속		직 급	

▣ 소속 변경사항

구분		주소속	중복소속(해당자에 한함)
변경전	대학(원)		
	학부(과)		
변경후	대학(원)		
	학부(과)		
변경 사유 ※ 개조식으로 작성			

「교원인사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소속 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_____ (인)

변경 전 소속부서		변경 후 소속부서	
대학(원)장	(인)	대학(원)장	(인)
학부(과)장	(인)	학부(과)장	(인)
소속교원	(인)	소속교원	(인)
소속교원	(인)	소속교원	(인)
소속교원	(인)	소속교원	(인)

호서대학교 총장 귀하